

단기 4293번 11월 17일

고시체 565 그

4293년 산 주구수 납장소밀 일자 고시 척간

시 풍 그

施行上
의
注
意

고자 와안 시행 참오리까 재결을 양정하나이다

(고자 암)

서울특별시 고시 제
~~제~~ 2호

단기四三년산 추구수입장소 및 일자를
와 같이 고시한다

단기四三년十一월十七일

성종특별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김주호

四元三日산주부수납장소및일행경로

수	남	장	소
동대문	동대문구	희경동	동신강미소
성북	성북구	화양리	장안동 삼무소
서래문	서래문구	은령동	삼호동 삼무소
마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
은산	은평구	광장	은평구
영등포	영등포구	구청	구청
"	"	"	"
=" 九	= 三	= 一	= 三
九	八	七	八
= 一	= 二	= 三	= 三
도림제동	도림동	성우소	성우소
사무소	사무소	일	일

(안=)

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1/2

부

0

각 구 칭장 (제종로 중구)

1/2

도 건

본건 193년산 추구수법장 노별 일가를 별지와 같이
결정고시 했으니 가관하 으소에 개시하여 일정

주지체 하지 암

기

(2) 시문 철부함

(아) 三

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1. 2. 3. 4.

상호사세점장

시정찰구강

농경서울지소장

한운 상호지점장

미포

도 전

본관 丙午年
三月
本
院
主
事
所

와
같이
설정
부
기
함
명
우
양
지
히
고
수
법

수법
일자
를
별기

설
의
적
구
첩
조
회
주
심
을
바
라
나
이
다

(고시문을 읽는부록)

기

(계)

496

제

9. 9.

단기 三九三 텐 월 수 일

농림부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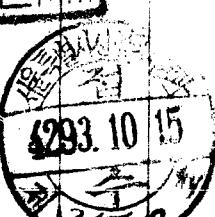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구

동

로 93년 산 추곡수남 묘강 작성 뱄부
금관산 추곡수남의 완수를 기하기
위하여 수제 수납 오강을 자성 뱄부
하오니 관계 각원으로 하여금 숙득
을 대처하여 든 수납사무 수행에 만
유루 없도록 시조하시오

1993. 10. 15.
S.



— 농림부양정국 —

檀紀四二九年十月

四二九三年產秋穀收納要綱

農
林
部

檀紀四二九三年產秋穀收納要綱

四二九三產秋穀收納에 있어 臨時土地收得稅法에 依한 收納糧穀、分配農地와 歸屬農地代價償還穀、農家貸與 및 交換糧穀回收와 四二八九年產秋穀豫買條의 完全且早速한收納을 期하고 저 이의 收納節次를 다음과 같이 定한다。

一、納入告知書의 發付

收納糧穀의 納入告知書 稅納、償還穀 貸與糧穀의 納付通知書는 市區邑面長責任下에 十月末日까지 納付義務者에게 到達되도록 發付함과 同時に 個人別收納簿를 作成하여 市區邑面에 備置하여야 한다。

二、收納場所및日字의 指定

地方長官은 農檢支所長과 協議하여 倉庫施設、檢斤器具交通事情等을 勘案하여 每邑面一個所程度로 收納場所및場所別收納事務取扱日字를 十月末日까지 一般에 周知되도록 告示함과 同時に 關係機關에 通報할 것

三、收納用施設및器具準備

決定된 수납장소에對하여는 檢查器具의 整備와 수납穀을 保管할倉庫施設을豫하點檢하고 清掃消毒의 實施는勿論不備한것을 完全整備케 할것이며 所要資料및器具等을豫하具備함으로써 事故防止策을 講求할것

四·現物出荷에對한事前指導

各市區邑面長은 秋穀의適期刈取와 脫穀·乾燥·調製및包裝에對한事前指導를徹底히하고 現物出荷에 있어서는 部落單位收納의順次別出荷制를實施하여·收納場所의混亂이 없도록措置할것

五·現物의收納 및出荷

(1) 各種收納糧穀은 十二月末日以內에收納完了토록 司稅 및 農地關係機關은 市區郡(糧政系統) 및 邑面과緊密히連絡하여·此期間中出荷完了토록 積極努力할것

(2) 本秋穀收納에 있어서 合格品에限하여收納할것이니· 不合格品의出荷가 없도록事前에充分한指導를 加할것

(3) 出荷場所에는必히 左의關係機關職員立會下에現物検查整理의正鵠을期하여·後日所管會計間의代金清算과 糧穀受拂計算에違算無도록措置할것(第一圖面表參照)

市區郡職員

邑面職員

農檢職員

(4) 第三項의計劃出荷制에依하여·出荷日字가指定된部落의洞里長은部落各納付者로하여

금各種出荷糧穀을所定納付日字에出荷하도록指導督勵할것

(5) 出荷者는必히納入告知書 또는納付通知書를收納場所에持參토록할것

(6) (5) 個人別納付量에 있어서 叱未滿의端數가有할時는 稅納糧穀·償還糧穀·貸與回收糧穀交換糧穀및 四一八九年產秋穀豫買條分으로區分하여·部落에서 叱單位로區分包裝하여 그內容에對한個人別數量을明示한書面을添附하여·收納場所에出荷하고·部落全體出荷量에있어서 叱未滿의端數가有할境遇에는 그端量(重量制單位kg·邑面以上集計報告는千分率適用할것)대로洞里長責任下에出荷할것

(7) 收納場所에서의端量出荷分에對하여서는市區邑面長責任下에蒐集包裝하여検查를 받을것

(8) 納付義務者는出荷糧穀에對하여·農產物検查法에依한検查를 받은後現物을市區邑面에引渡할것이며 檢查員은法에所定된検查等級에依한·收納對象糧穀에限하여受檢證(別紙第一號樣式)을發行하고·收納對象等級品外의糧穀은再調出荷를命할것

受檢證은二通作成하여·一通은出荷者로하여금現物과 함께市區邑面에引渡케하고·一

通은農檢에서集計保管도록 할것

(9)

市區邑面은納付者提示의告知書와糧穀受檢證및出荷糧穀現物을對照하여

(가) 收納數量이告知書數量에達할時は納入告知書또는通知書에領收印을捺印하고 裏面에等級別收納量을記載한後領收證을納付者에게交付하고 納入告知書또는通知書는市區邑面이 集計整理保管도록 할것

(나)

收納數量이告知書記載量에未達할時は 假領收證 (別表第二號樣式) 을發行한後後日殘餘量을納付하고假領收證을提示할때에 告知書에依한 正領收證과交換할것

假領收證을二通作成하여 一通은納付者에게交付하고 一通은市區邑面이保管整理할것

(10)

收納糧穀處理

(가) 市區郡邑面은前各號에依하여收納된糧穀을 個人別收納糧穀納入告知書및通知書에依據遲滯없이關係帳簿를整理할것

(나) 收納糧穀保管은區邑面이提出한收納日計表에依하여 서울特別市長、市長및郡守가收納場所別當日收納糧穀을關係 證憑書類와 對照確認하여 保管業者에게委託保管할것

(다) 今年產收納糧穀保管은 舊年產移越糧穀과混同치 않도록區分保管할것

六、報告 (第二號圖表參照)

1. 日 報

(가) 市區邑面은收納場所別收納糧穀을稅納、分配農地、歸屬農地、農家貸與糧穀回收分過年度貸與未回收分外交換糧穀回收分、四一八九年產秋穀豫買條(別表第六號樣式)別로糧穀收納日計表 (別紙第三號樣式)을作成하여 分配農地、歸屬農地分은各三通式作成하여市郡에二通 (糧政、農地) 提出토록하고 一通은市區邑面에서保管할것이며 其外稅納分、貸與回收分은二通作成하여市區郡邑面에서各一通式保管整理할것

收納日計表에는検査員이 確認할것

(나) 市郡은道에 道는農林部에區分別收納日別實績을各各電文報告 (서울特別市및京畿道는書面으로日報報告) 할것

2.旬 報

(가) 市、區、邑面은稅納收納分에對하여는關係稅務署에旬報로서報告할것

(나) 市區郡은管內收納日計表을集計하여收納實績報告書(旬報) (第四號樣式) 를作成

서울特別市및道에報告할것

(다) 서울特別市長、各道知事、司稅廳長은 市區郡 및 稅務署의 報告를 對查集計하여 每月
收納實績報告書 (別表第四號樣式) を翌月五日까지 必着 토록 農林部長官 또는 財務部
長官에게 提出할 것

支所에報告하고本所는各支所의旬報를對查集計하여農林部에報告할것

3 · 磨勘報告

(가) 市長、區廳長、郡守는 糧穀收納最終磨勘報告書를 서울特別市 및 道에 提出할 時 糧穀收納確認報告書(第七號一樣式)를添付하여 提出할 것

서울特別市 또는道에 備置하고 一通은 農林部에 提出할 것
• 代金決済

七 代金決酒

糧穀管理特別會計는 收納된 粮穀數量範圍內에서 其代金을概算支拂할수있으며 最終清算代金決済

上記外如히 檢査합

卷之三

農產物檢查所

上記 외 如 허 檢 查 함

農產物檢査月

植物学

註 本表는 韓文이 發行하여 納入書에 기재付한다.

(第一號書式) 注意 本檢查記載에 있어서는必ず 엔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1127

1126

No. _____		糧穀收納日計表					收納區分	稅. 分. 歸. 回
		檀紀4293年	月	日收納場所				
等級別 穀種	總數	一等品	二等品	三等品	等外品	備考		
總數	呎	呎	呎	呎	呎			

上記糧穀收納計數을 確認함

收納者 ○ ○ 邑面 職 姓名 ④

立會者 ○ ○ 市郡 職 姓名 ④

検査者 ○ ○ 支所 ○ ○ 出張所 職 姓名 ④

註 1. 收納區分은 稅分歸回 等으로明白히表示할것

2. 立會者에는 市郡職員이署名捺印할것

3. 備考欄에는 納入人員數 및 其他參考事項을 記載 할 것

第二號樣式三枚(正副兼複寫)

註 1. 收納區分은 土地收得稅는 ④ 分配農地債還般은 ④

歸屬農地債還耕은 ④回收糧穀은 ⑤로 표시할 것

2. 正本은 納入者에게 交付하고 副本은 區市 및 邑面이 保管한다

註 1. 種類別로 구분記入한것

提出者로서特記한事項이有할時は備考欄에記入할것

2. 本表는 農檢機關이 作成하여 上部機關 및 市郡道에 提出하여 야 한다.
 3. 農檢本所長은 道裡成績旬報를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할 것

第四號樣式

註 1. 最終報告에 있어 서는市郡은倉庫別 邑面別 道는市郡別

報告의寫本을添付한總括表를各其所轄上部機關에提出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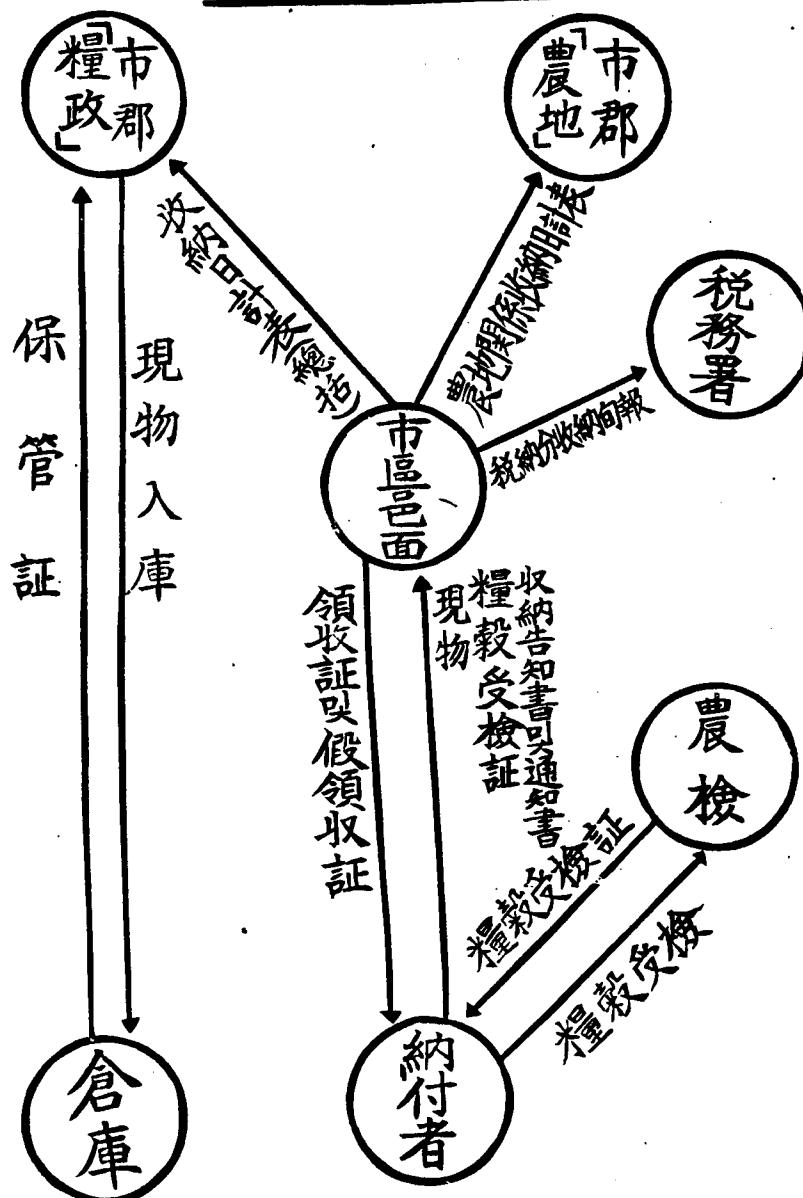
(第七號一樣式)

註 本表는市郡이保管業者別로三通作成確認及後市郡道保管業者別로各一通式保管備置할

第六號樣式

註 區分欄은何年度分農家貸與糧穀條等으로區分하여穀種別小計
量記入할것

第一圖表



(第七號二樣式)

報告例第2號2(隨時報)

(文書發送番號)第 號

糧穀收納確認報告書

(受信機關名)

貲下 (報告機關名) 確認者

檀紀429 年

(報告期限收納磨勘即後) 提出年月日
檀紀429 年 月 日

等級別 種類	總數	總數	一等品	二等品	三等品	等外品	備考
		呎	呎	呎	呎	呎	

上記糧穀은檀紀4293年產秋穀收納分으로서收納保管함을

確認함

注意 1. 當年收納磨勘報告書를 提出할 때 서울특별市長 및 각 道 知事는

報告例第1號書式 (檀紀42 年度()穀收納實績報告書)

에添附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함

第二圖 表(報告)

